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10월 10일 22시 18분



목차

목차	2
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	3
지원 대상	3
지원 범위 및 내용	3
신청 기간	3
신청 방법	3
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	3
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지원 신청 절차	4
신청 서류	4
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	4
청구 서류	5
문의 전화	5

출산지원금 지원	난임부부 기초 검진비 지원	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한방난임치료 지원	신혼 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	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
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	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	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
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		

지원 대상

-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로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지원 범위 및 내용

- 냉동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(초음파, 검사비, 주사제등)
- 지원 횟수 : 부부당 최대 2회
- 지원 금액 : 1회당 최대 100만원

신청 기간

- 연중(예산 소진시 까지)

신청 방법

-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보건소

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

시술 전 상담

사전 신청 없이
난임시술 기관에서 시

시술 후 지원 신청 및
청구
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지원 검토(보건소) 후
지급

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지원 신청 절차

	Case I 난임진단 무	Case II 난임진단 유
지원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(그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)
시술 전 유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여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후 시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술 시작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※ 신청누락 시 소급 적용 불가
시술 후 신청 및 청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지급 시술완료 후 3개월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

신청 서류

1 신분증

2 주민등록등본 1부

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보험료 납부 확인서

> * ①~③의 경우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

4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, 다문화 가정

5 생식세포(난자)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

6 동결 보조 소견서(동결·해동 방법 포함) 1부

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

1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

2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

※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

3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당사자별 각 1부

청구 서류

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(보건소에서 작성)

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(기관에서 발급)

3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

4 통장사본

문의 전화

·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/ 061-659-4265

COPYRIGHT © YEOSU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